

진도군 자치법규 공포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제282회 진도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진도군 자치법규를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2년 9월 7일

진도군수

- 붙임 1. 진도군 자치법규 공포 목록 1부.
2. 진도군 자치법규 공포문 각 1부.

자치법규 공포 목록

연번	자 치 법 규 명	담당부서
1	진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관 광 과
2	진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경제마케팅과
3	진도군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환경산림과

공 포 문

제282회 진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2. 8. 30.)
에서 의결된 진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9월 7일

진 도 군



김희수

진도군 조례 제2561호

붙임 진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1부.

진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관광진흥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진도군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촉진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3.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5. 그 밖에 군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관광사업 지원) ① 군수는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명소나 관광지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경우
2.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기념품을 개발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사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규모, 신청, 지급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관광취약계층 지원) ① 군수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지원
2. 관광사업자 · 관광 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교육 및 성인지교육
3.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4. 그 밖에 관광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료제공 등) 군수는 제5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업에 필요한 각종 관광자료 제공
2.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3. 관광홍보물 지원 등

제8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3. 지원받는 사항과 관련하여 사전에 제출·협의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9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관광안내소 업무)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 홍보 및 안내

2. 교통·숙박·음식·쇼핑 등 관광산업 정보 제공
3.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관광 불편신고 접수
5. 그 밖에 관광객 안내에 필요한 사항 등

제12조(포상)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 등 지역관광 진흥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과 절차는 「진도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포 문

제282회 진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2. 8. 30.)
에서 의결된 진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9월 7일

진 도 군



수원호수

진도군 조례 제2562호

붙임 진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진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취소)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외식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할 때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사에 협조할 것을 그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이용 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

3.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격, 위생, 청결 등 지정기준 이행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사결과에 따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 및 물가조사요원의 현지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물가 모니터요원의 운영) 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 조사, 위생청결도 점검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물가 모니터요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채용하며, 보수 등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포 문

제282회 진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2. 8. 30.)에서
의결된 진도군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9월 7일

진 도 군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ue ink, written over a horizontal line. The signature appears to be '김영수' (Kim Young-su).

진도군 조례 제2563호

붙임 진도군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진도군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진도군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부터 제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 그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의 약도 1부
3. 판매소 지정서

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사람의 판매업을 승계받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제8조의4(판매소 폐업)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폐업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5(판매소의 지정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판매소 지정 취소 시에는 지정서, 판매소 표찰, 판매가격 안내문, 잔여봉투 등을 반드시 회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의2에 따른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를 초과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의2에 따른 판매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8조의3에 따른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등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위·변조 및 불법으로 유통되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경우

제21조의 제목“(수수료의 감면)”을“(수수료의 감면 및 동결)”로 한다.

제2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군수는 중앙정부 등의 물가안정대책 협조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수수료 등을 일정 기간 감면 또는 동결할 수 있다.

별지 제17호, 제18호, 제19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7호서식](신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위치 변경 승인 신청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상 호		전화번호	
지정번호			
변경하고자 하는 위치			
변경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진도군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3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위치의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진 도 군 수 귀 하</p>			
<p style="text-align: center;">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의 약도 1부 3.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서 			

[별지 제19호서식](신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폐업신청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상 호			
지정번호			
판매소 위치			
폐업사유			

「진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4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폐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

구비서류 :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8조의3(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 그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u> <u>2.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의 약도 1부</u> <u>3. 판매소 지정서</u> <p><u>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사람의 판매업을 승계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u> <u>2. 판매소 지정서</u>
<p><u><신 설></u></p>	<p><u>제8조의4(판매소 폐업)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 폐업하려는</u></p>

<신 설>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폐업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5(판매소의 지정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판매소 지정 취소 시에는 지정서, 판매소 표찰, 판매가격 안내문, 잔여봉투 등을 반드시 회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의2에 따른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를 초과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의2에 따른 판매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8조의3에 따른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등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위·변조 및 불법으로 유통되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

제21조(수수료의 감면) ①·②
(생략)
<신설>

투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경우
제21조(수수료의 감면 및 동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중앙정부 등의 물가
안정대책 협조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수수료 등을 일정
기간 감면 또는 동결할 수 있다.